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8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예지 · 김선교
김태규 · 고동진 · 김미애
김용태 · 윤한홍 · 박충권
김위상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생략)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